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목 차

1조.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3
2조. 소개 (Introduction)	8
3조. 목적 (Objectives)	8
4조. 기준 및 제재 (Criteria and Sanctions)	9
5조. 절차 (Procedure)	11
6조. 참가자격 부여 주체 (Licensor)	12
7조. 참가자격 신청자 및 참가자격 (License Applicant and Licensee)	17
8조. 주요평가절차 (Core Process)	20
9조.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23
10조.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27
11조.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Criteria)	30
12조. 법적 기준 (Legal Criteria)	37
13조.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41
14조. 최종 조항 (Final Provisions)	47
별첨 1.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예외정책	49
(Exceptions Policy for AFC Champions League)	
별첨 2.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정책	51
(Exceptions Policy for K LEAGUE)	
별첨 3.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적용	53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the AFC Champions League)	
별첨 4. K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적용	54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2021년판)을 기초로 한 AFC 클럽대회 및 K리그 대회참가자격 부여에 관한 규정

1조 (Article 1) : 용어 및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참고 : 단수형 용어는 복수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용어	정의
회계보고 정책 Accounting Policies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법인에 의해 채택된 구체적인 절차, 기준, 협정, 규칙, 실행을 통칭함.
ACL	AFC 챔피언스 리그 (The AFC Champions League)
AFC	아시아축구연맹 (The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클럽 라이선싱 파이낸셜 핸드북 AFC Club Licensing Financial Handbook	본 규정 내 재무기준과 관련된 운영 및 기술적 안내를 제공하는 AFC가 발행한 핸드북. 라이선스 신청자의 재무기준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과 템플릿 모음
AFC 경기장 규정 AFC Stadium Regulations	AFC 대회 경기개최를 위해 경기장이 갖추어야 할 최소 필요기준을 나열한 규정
연례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법정연도 말에 준비하는 재무제표로 통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주식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나 표 등을 의미.
관계기업 Associate	투자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합명회사(Partnership)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Unincorporated entity)으로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며,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벤처(합작회사) 투자지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회계 감사 Audit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목적은 재무제표가 준비되었는지, 모든 자료가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재무보고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한 회계사의 검증을 받기 위함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 또는 ‘모든 자료들이 믿을 만하고 잘 제출되었음’ 등의 회계사의 의견이 첨부될 수 있으며, 재무와 기타 정보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역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감사 업무를 통해 회계감사관은 제출된 정보가 잘못 기술되지 않았음에 대해 절대적이지는 않으나 높은 수준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회계감사보고서 내 타당한 확인을 통해 긍정적으로 표현된다. “감사완료 (Audited)”는 이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예산 Budget	미래에 발생가능 하거나 법인에 의해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경영진의 추정을 기초로 법인의 미래재무정보를 포함한 명세표

용어	정의
연결 재무 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단일 경제 실체의 것과 같이 표시된 그룹의 재무 제표
CLAS 또는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 CLAS or AFC Club Licensing Administration System	본 규정의 실행, 평가 및 집행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정보 취득 및 산하 클럽에 대한 정보를 라이선스 발급자들간 공유를 목적으로 AFC가 개발한 IT 시스템
통제 Control	기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법인의 재정 및 운영정책을 관리하는 지배력. 통제는 주식 보유, 정관 또는 계약을 통해 획득 가능
클럽 라이선싱 기준 Club Licensing Criteria	라이선스 승인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으로 본 규정 내 5개의 카테고리(스포츠, 인프라, 인사행정, 법률 및 재무)로 분류되어 설정되어 있다.
주요 경제적 중요 사건 또는 조건 Event or condition of major economic importance	직전 회계연도 또는 반기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건 또는 상태가 보고 실체의 재무제표에 자료로 고려되거나 보고 실체의 운영, 재무상태 및 순자산의 결과에 대해 다른(다양한) 발표가 요구될 경우 해당 사건 또는 조건은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다.
회계연도 Financial year	법정 마감일까지의 회계보고기간으로 반드시 1년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중간기간은 아니다.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해당 법인에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 또는 행동 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 효과에 대한 정보.
계속기업 Going concern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 운영되어 성장중인 기업으로 '계속 기업' 개념 또는 추정은 청산에 대한 상당한 위협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을 나타내는 회계용어 이다. 보고 실체는 일반적으로 계속 기업의 관점으로 본다. 이는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보고 실체가 청산 의도 또는 청산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거래 중단 또는 채권자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룹 Group	모회사와 모든 자회사.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가진 법인체.
역사적 재무정보 Historic financial information	법인과 관련된 과거 사건의 재무 영향을 분석한 정보. 역사적 재무정보는 라이선싱 결정 전 재무 실적과 상황에 대한 자료로 사용된다.
반기 재무제표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중간기간의 재무제표 완본 또는 요약재무제표 세트가 포함된 재무보고서
반기 Interim period	하나의 회계연도 보다 짧은 재무 보고 기간. 반드시 6개월일 필요는 없다.

용어	정의
합작투자 Joint venture	둘 혹은 그 이상의 단체(투자자)가 공동 지배를 조건으로 착수하는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계약상의 합의
대한축구협회 Korea Football Association	대내외적으로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로 본 규정 내에서 ‘협회’로 부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한국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를 주관하는 경기단체로 본 규정 내에서 ‘K리그’ 또는 ‘연맹’으로 부른다.
K리그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상위 프로축구리그로 K리그1 (1부 리그)와 K리그2(2부 리그)로 구성되어 있다.
K리그1 K LEAGUE1	K리그 1부 리그 명칭
K리그2 K LEAGUE2	K리그 2부 리그 명칭
K리그 클럽라이선싱 매뉴얼 (매뉴얼) K LEAGUE Club Licensing Manual (Manual)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서술한 실무서. 라이선스 발급자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규정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의미 전달과 평가의 진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규정) K LEAGUE Club Licensing Regulations (Regulations)	국내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서술한 실무서. AFC 클럽 라이선싱 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적 특성 및 목적을 반영한 모든 최소 필수요건을 포함한다.
라이선스 Licence	K리그1, K리그2 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해당 시) 참가를 위해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최소 필수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연맹이 발급하는 증명서
라이선스 신청자 Licence applicant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국내 및 국제 클럽대회를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전적이고 고유한 책임을 갖는 법인체
라이선스 소지자 Licensee	라이선스 발급자를 통해 라이선스를 승인받은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싱 행정부 Licensing administration	라이선스 발급자 내 클럽라이선싱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 또는 직원
라이선스 시즌 License season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신청 후 승인 받은 기간. 라이선스 발급자가 라이선싱 결정문의 AFC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동일 마감일 까지 지속된다.
라이선스 발급자 Licensor	본 규정에 의거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주체
라이선싱 결정 목록 List of licensing decisions	AFC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형식을 통해 국내 의사결정기구가 라이선싱 인허가 절차를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를 승인 또는 불승인 된 것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AFC에 제출하는 목록

용어	정의
<p>자료와 구체성 Material or Materiality</p>	<p>자료 혹은 정보의 누락이나 잘못된 진술은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제출한 재무 정보를 기초로 한 사용자의 결정에 개별적 또는 총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이다. 구체성은 주변 환경 또는 문맥 내에서 판단되는 정보의 누락 또는 잘못된 진술의 크기나 본질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 혹은 정보의 크기 혹은 속성 또는 둘 다의 조합에 따라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p>
<p>모회사 Parent</p>	<p>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한 법인</p>
<p>회원 Registered member</p>	<p>국내법과 국가 협회 규정을 따라야 하는 국가별 협회의 회원과 가맹 리그의 모든 법인체</p>
<p>보고 실체 (독립체) Reporting entity/entities</p>	<p>등록된 회원 단체 또는 축구 기업 또는 법인의 그룹 또는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법인의 기타 다른 조합으로 관련 정보는 클럽 라이선싱 상의 목적으로 라이선싱 발급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p>
<p>리뷰 Review</p>	<p>재무정보 리뷰 업무의 목적은 회계감사관이 리뷰를 기초로 정의된 회계 보고 틀에 따라 회계감사관이 모든 면을 대상으로 해당 재무정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회계감사관의 주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p> <p>리뷰는 회계 감사와는 대조적으로 재무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아님에 대한 확실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은 아니다. 리뷰는 문의하기, 재무 및 회계 사안에 대한 책임자, 분석적 접근 및 기타 검토 절차로 구성된다.</p> <p>리뷰는 재무정보가 회계감사관의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가져올 수 있으나, 회계감사를 요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p>
<p>중대한 변화 Significant change</p>	<p>라이선싱 발급자에게 이미 제출된 서류를 자료로 고려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라이선싱 서류의 제출 전에 발생한 경우, 다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한다.</p>
<p>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p>	<p>재정 및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지는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능력. 중대한 영향력은 지분 소유, 정관 또는 계약을 통해 획득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 당사자 또는 동일한 최종 통제 기구의 집합체 (AFC, AFC 회원 협회 및 산하 리그 제외)는 보고기간 내 라이선싱 소지자의 총 수입의 30% 이상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할 경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p>
<p>경기장 Stadium</p>	<p>대회의 경기가 열리는 장소로 모든 인접 소유물 및 시설물(예를 들어 사무실, 응접구역, 미디어센터 및 출입증 발급 센터) 등이 함께 포함된다.</p>
<p>법정마감일 Statutory closing date</p>	<p>보고 법인의 매 회계연도 마감일</p>
<p>후속사건 Subsequent events</p>	<p>라이선싱 결정 후 발생하는 사건 또는 상태</p>
<p>자회사 Subsidiary</p>	<p>(모기업으로 알려진) 다른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파트너십과 같은 비법인을 포함한 독립체</p>

용어	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부속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p>	<p>공시 및 회계정보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불충족 시, 재무제표와 더불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출되는 재무 정보 부속정보는 재무제표와 일치하는 회계 및 회계 정책을 기초로 준비되어야 한다. 재무정보는 연간재무제표의 준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출처로부터 발췌되어야 한다. 해당 시, 부속 정보 내 공표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와 일치하거나 맞추어 진 상태로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p>	<p>클럽의 등록된 선수들이 축구 훈련 및 유소년 발전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장소</p>

본 규정의 목적상, 만일 문맥 내 다음을 포함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 (a)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해당된다.
- (b) 남성형은 여성형을 포함하며, 그 반대도 해당된다.
- (c) 자연인에 대한 언급은 법인과 기업인을 포함한다.
- (d) 모든 정의된 용어는 별도 서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AFC 정관 내 기술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조 (Article 2) : 소개 (Introduction)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하 ‘규정’)은 K리그1, K리그2 및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국내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다.

2.1 본 규정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주최 하에 진행되는 클럽대회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용된다.

2.2 본 규정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관할하며, 특히 다음을 정의한다.

- a) 산하 클럽에 대한 라이선싱 발급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 필요요건 및 클럽 라이선싱 기준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라이선싱 발급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절차
- b) K리그1, K리그2 및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대회참가 자격(이하 ‘라이선스’) 및 라이선싱 신청자
- c)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싱 승인을 위해 클럽이 이행해야 할 스포츠, 시설, 인사 및 행정, 법적, 재무 관련 최소기준

2.3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은 규정 내 기술된 기준 및 평가의 표준 해석을 제공하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을 통해 보충 된다.

3조 (Article 3) : 목적 (Objectives)

3.1 본 규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a) K리그1, K리그2 및 AFC 챔피언스 리그의 청렴성 및 신뢰성 보호
- b) 리그의 재정적, 스포츠적, 법적, 인적, 행정적 및 시설 관련 기준에 대해 벤치마킹 통한 클럽의 발전을 가능토록 함;
- c) 리그 내 축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기준에 있어 지속적인 향상과 각 클럽의 유소년 훈련 및 관리에 지속적인 우선순위 부여;
- d) 클럽들이 적절한 수준의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e) 클럽의 재정능력 개선, 신뢰성 및 투명성의 향상 및 클럽이 자신들의 피고용인, 국세청 및 다른 클럽에 대한 부채를 기한 내 해결하도록 하여 채권자 보호에 대한 필요한 중요성 부여;
- f)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안전한 경기장 및 시설 제공을 위해 클럽의 스포츠 제반시설 개선.

4조 (Article 4) : 기준 및 징계 (Criteria and Sanctions)

4.1 기준 (Criteria)

4.1.1 기준의 단계적 차이 (Criteria Gradation)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가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준은 다음 5가지 기준으로 분류 된다.:

- a)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 b)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 c)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 d) 법무 기준 (Legal criteria);
- e)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4.1.2 규정 내 기술된 기준은 다음 세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해당 분류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부합한다.

4.1.3 9조부터 13조까지 정의된 기준은 K리그 및 AFC 챔피언스 리그 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를 승인받기 위해 클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4.1.4 9조부터 13조까지 기술된 기준은 A, B, C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a) A - 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

본 등급은 라이선스 신청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A - 클럽 라이선싱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취득이 제한된다.

b) B - 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라이선스 신청자가 'B - 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발급은 가능하다.

c) C - 클럽 라이선싱 기준 등급

'C - 클럽 라이선싱 기준'은 모범사례로 권고된다.

4.1.5 라이선스 발급자는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목적으로 AFC가 설정한 기준을 강화시키거나 최소 필수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발급자는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소 필수요건의 증가, 기준 등급의 강화 또는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최소 클럽 라이선싱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4.1.6 라이선스 발급자가 국내 클럽라이선싱 규정에 도입한 최소 필수요건 강화, 등급 상향 또는 추가 기준은 해당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서도 적용된다.

4.2 제재 (Sanctions)

4.2.1 클럽자격심의회(First Instance Body, FIB - 1심기구, 6.5조 참조) 또는 클럽자격재심위원회 (Appeals Body, AB, 항소 기구 - 6.6조 참조)는 본 규정의 위반(위조 서류의 제출, 마감일 미준수, 개인에 대한 제재, 1심 기구 또는 라이선싱 행정부에 대한 미협조 등과 같은) 및 “A”기준이나 “B”기준 불충족 등에 대해 제재를 설정할 수 있다.

- a) 경고 (Warning)
- b) 견책 (Reprimand)
- c) 벌금 (Fine)
- d) 출전정지 (Match suspension)
- e) 축구관련 활동 참가 금지 (Ban on taking part in any football-related activity)
- f) 기준 이행을 위한 마감일 연장 (Extended deadline to fulfill criteria)
- g) 특정 마감일까지 기준 이행 (Obligation to fulfill criteria by certain deadline)
- h) 승점 감점 (Deduction of points)
- i) 정직 (Suspension of personnel)
- j) 연맹 내 해당 기구에 문제 보고
(Reports of issues to appropriate bodies within the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 k) 보증서 및 이행각서 제출 (Obligation to submit guarantees and undertaking)
- l) 대회로부터 퇴출 (Exclusion from competitions)
- m) 하위 디비전 강등 (Relegation to a lower division)
- n) 지원금 / 상금 지급 보류 (Withhold grants / prize money)
- o) 추가적인 세부 재무정보 청구 (Seek more financial details)
- p) 무관중 경기 (Playing a match without spectators)
- q) 중립경기 (Playing a match on neutral territory)
- r) 특정 경기장 내 경기개최 금지 (Ban on playing in a particular stadium)
- s) 라이선스 재검토 (Licence review)
- t) 라이선스 취소 (Licence withdrawal)
- u) 선수이적 금지 (Transfer ban)

4.2.2 “B”기준 불이행 시, 징계는 아래와 같다:

- a) 각 기준의 최초 위반 시, 서면으로 경고가 주어진다.:
- b) 위반 정도에 따라 지원금/수당 지급 보류.

4.2.3 라이선싱 규정 위반 사안에 따라 연맹 ‘상벌’ 규정이 적용된다. (예, 위조 서류 제출, 개인에 대한 제재 등)

5조 (Article 5) : 절차 (Procedure)

5.1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운영 (Management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5.1.1 연맹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 해당 행정부서 및 의사결정기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5.1.2 절차는 클럽의 제출 및 자체 증빙과 라이선싱 행정부 및 라이선싱 행정부가 임명한 외부기관에 의한 검토, 평가 및 권고로 구성된다.

5.2 라이선싱 절차 (Licensing Process)

5.2.1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클럽은 라이선스 발급 시즌(Season to be Licensed)의 직전 시즌에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2.2 클럽은 K리그1, K리그2 및 AFC 챔피언스 리그(해당 시) 참가를 위해 자신의 라이선스를 취득/갱신하기 위해 매 시즌 라이선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5.2.3 라이선싱 절차의 시작 시점에 연맹은 관련 절차, 주요평가절차(Core Process)의 단계 및 시간계획 등을 클럽에 통보하는 라이선싱 회람을 발송해야 한다.

5.3 발전 (Development)

5.3.1 클럽 라이선싱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규정화하기 위해 고안된 점진적인 제도이다.

5.3.2 해당 클럽 라이선싱 기구는 내부 심사를 통해 현재 규정 및/또는 매뉴얼(해당 시) 내 기준 검토 및 개정을 연맹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3.3 현재 규정 및/또는 매뉴얼(해당 시)은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 시, 수시로 재검토 및 개정될 수 있다.

5.4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5.4.1 AFC 사무국은 규정 내 마련된 ‘별첨 1’에 따라 AFC 챔피언스 리그에 있어 본 규정 내 일부 규정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할 수 있다.

5.4.2 연맹은 규정 내 마련된 ‘별첨 2’에 따라 K리그에 있어 본 규정 내 일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연맹은 본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 AFC 사무국의 검토 의견을 기초로 한다.

6조 (Article 6) : 라이선스 발급자 (Licensor)

6.1 원칙 (Principle)

6.1.1 라이선스 발급자는 AFC 회원협회로서 국내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운영한다. 라이선스 발급자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 운영을 위해 CLAS를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6.1.2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에 의거, 대한축구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연맹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협회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적절한 시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6.1.3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제도를 관리하며, 라이선싱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 절차를 결정한다.

6.1.4 연맹을 통한 기구는 클럽 라이선싱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행한다. :

- a) 본 규정, 예외 정책, 위임 요청 및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다른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 b)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실행할 라이선싱 행정부;
- c)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1심 기구(FIB) 및 항소 기구(AB);
- d)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맹 사무국을 지원할 목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자가 위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실무단이 구성될 수 있다. (예, 법률자문단, 재정자문단 등);
- e)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관련된 의무 위반 및 준수성 감사 결과에 따른 일부 결정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AFC 사법기구, AFC 징계 규정 및 해당 AFC 대회규정이 적용된다.

6.2 정의 (Definition)

6.2.1 연맹은 라이선스 발급자이다.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AFC의 승인을 바탕으로 연맹에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위임한다.

6.2.2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제도를 관리하며, 라이선싱 기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결정한다.

6.2.3 특히, 라이선스 발급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6.3조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적절한 라이선스 행정부 설치

- b) 6.4조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최소 2개의 의사 결정 기구 설치
- c) 4.2조에 정의 된 제재 목록 작성
- d) 8조에 정의 된 주요평가절차 정의
- e) 라이선스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의 적절성을 고려 후 평가하며 8.2조에 따라 평가 절차 정의
- f) 6.2.4.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라이선스를 신청한 클럽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라이선스 절차 중 제공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
- g) 주요평가절차의 엄격한 준수
- h) 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라이선스가 승인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

6.2.4 동등대우 및 비밀보장 (Equal treatment and Confidentiality)

6.2.4.1 라이선스 발급자는 주요평가절차 진행 중 모든 라이선스 신청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6.2.4.2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진행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정보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완전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라이선싱 과정에 관여하거나 라이선스 발급자를 통해 임명된 자는 과업을 담당하기 전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6.3 라이선싱 행정부 (Licensing Administration)

6.3.1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싱 행정부를 운영할 책임을 갖는 라이선싱 매니저를 임명해야 한다.

6.3.2 라이선싱 행정부의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클럽라이선싱 제도의 준비, 실행 및 향후 발전 방안;
- b) AFC 클럽라이선싱 행정 시스템(CLAS) 접속 및 운영;
- c) 라이선스 신청자를 위한 CLAS 사용 교육 및 지원 제공;
- d)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 e) 시즌 중 라이선스 소지자에 대한 지원, 자문 및 모니터링;
- f) 라이선싱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라이선스 소지자가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사전에 제출한 정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AFC에 통보 (AFC 챔피언스 리그에만 적용);
- g) AFC 및 다른 AFC 회원협회의 라이선싱 부서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업무연락을 담당.

6.3.3 라이선싱 행정부 내에는 관련 국내기관이 인정하는 회계/회계감사 관련 학위 및 재무 관련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한 명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 회계자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6.3.4 라이선싱 행정부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발급된 라이선스에 대한 요건 유지를 실패한 경우, 해당 사례를 FIB에 보고한다. 라이선싱 행정부는 협회 또는 연맹 내 타 부서에 라이선스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6.3.5 라이선싱 행정부는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설명, 추가 서류 및 정보 요청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추가 증빙자료 및 해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라이선싱 행정부의 재량이다.

6.3.6 라이선싱 행정부는 AFC의 마감일과 K리그 개막일을 고려하여 연간 클럽 라이선싱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일정을 수립한다.

6.3.7 라이선싱 행정부는 라이선스 발급, 제재, 라이선스 취소 및 기타 라이선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FIB에 권고할 수 있다.

6.3.8 라이선싱 행정부 및 라이선싱 행정부가 요청한 기타 자문위원은 FIB 및 AB의 회의에 참석한다. 본 회의에서 라이선싱 행정부의 역할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며, 해당 인원은 투표권이 없다.

6.3.9 라이선싱 절차에 참여한 모든 인원은 라이선싱 절차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안유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4 의사결정기구 (Decision-making Bodies)

6.4.1 라이선스 발급자는 다음의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a)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 b)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항소 기구 / Appeals Body, AB)

6.4.2 의사결정기구는 라이선스 발급자는 물론 상호간 독립된 기구이어야 한다. 해당 기구는 연맹의 라이선싱 행정부로 부터 행정 지원을 받게 된다.

6.4.3 의사결정기구는 클럽에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규정 내 명시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5 클럽자격심의위원회 (1심 기구 / First Instance Body, FIB)

6.5.1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이하 'FIB')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지정한 기한에 맞추어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라이선싱 매니저의 신청을 기반으로 라이선스의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6.5.2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해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6.5.3 라이선싱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서면으로 작성;
- b) 사유를 서술;
- c) 마감일/기한 포함;
- d) 기밀유지 준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공 (예, 재무에 관한 측면);
- e) 재심 요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진술 포함.

6.5.4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및/또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에 명시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의 미제출 및/또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결정한 마감일 이후의 서류 제출에 따른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FIB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결정이며, 항소 사항이 아니다.

6.6 클럽자격재심위원회 (항소 기구 / Appeals Body, AB)

6.6.1 클럽자격재심위원회(이하 'AB')는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라이선스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6.6.2 항소는 아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 a) FIB로부터 라이선스 발급이 거부된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 b) FIB에 의해 라이선스가 취소된 라이선스 소지자; 또는
- c) 라이선싱 매니저를 포함한 권한을 갖춘 기구로 지정된 라이선스 발급자

6.6.3 AB는 FIB의 결정을 기초로 이를 결정하며,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FIB 이전까지 제공한 증거만을 참고한다. 항소 요청서는 지정된 마감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6.6.3.1 추가적인 증거 및 서류를 AB에 제출할 수 없다.

6.6.4 라이선스 발급 거부 시, 해당 결정은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6.6.5 K리그 참가와 관련된 라이선스의 경우, AB의 결정은 최종이며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6.6.6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와 관련된 경우, AB의 결정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CAS가 최종 항소심의기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과 관련된 마감기한에 각 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Requirements of members of the decision making bodies)

6.7.1 라이선스 발급자는 FIB 및 AB의 위원을 임명한다. 해당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며, 재임명이 가능하다.

6.7.2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연맹 정관에 따라 선출 또는 지명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b) 라이선스 신청자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이해관계 상충 시, 활동을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 라이선스 신청자의 구성원, 주주, 사업 파트너, 후원자 또는 자문위원 등 이어서는 안 된다.;
- c) 라이선싱 매니저와 병행해서는 안 된다.;
- d) 라이선스 발급자의 사법적 기구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e) 협회 또는 연맹의 이사회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f) K리그 구단의 경영진은 동시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 g) 적절한 국가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최소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재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6.7.3 의사결정기구의 정족수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해당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6.7.4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은 라이선싱 행정부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6.2.4조 참조)의 엄격한 기밀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위원은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한다.

6.7.5 상기 자격요건에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자는 전문적인 수준의 역할 수행을 위해 라이선싱 기구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적, 전문적 훈련 및 경력 등)

6.7.6 의사결정기구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 기준을 규정화해야 한다.:

- a) 마감일 (예, 제출 마감일 등);
- b) 평등대우의 원칙 보호;
- c) 대표자 (법정 대표자);
- d) 의사반영의 권리 (예, 집회, 청문회 등);
- e) 공식 언어 (해당 시);
- f) 요청 시한 (예, 산출, 준수, 중단, 연장 등);
- g) 항소 시한;
- h) 항소의 효과 (예, 미지연 효과);
- i) 요청 증거의 유형;
- j) 입증 책임 (예, 라이선스 신청자는 입증 책임을 가진다);
- k) 결정 (예, 논리적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 l) 항의사유;

- m) 답변의 내용 및 형식;
- n) 심의/청문회;
- o) 진행비용 / 관리수수료 / 보증금.

7조 (Article 7) : 라이선스 신청자 및 라이선스 (License Applicant and Licensee)

7.1 소개 (Introduction)

7.1.1 본 장을 통해 K리그와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는 법인체에 대해 규정한다.

7.1.2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법인체는 라이선스 신청자로 부른다. 라이선스 신청자가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시, 라이선스 소지자가 된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오직 라이선스 신청자만을 다룬다.

7.2 라이선스 신청자 원칙 (Principle of License Applicant)

7.2.1 라이선스 신청자는 축구클럽이어야 한다. 즉,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축구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체이어야 한다.:

- a) 협회 및 연맹 정관에 따라 협회와 연맹의 회원으로 가맹된 법인체 (이하 ‘회원’); 또는
- b) 협회 및/또는 연맹에 등록된 회원과 계약적 관계를 가진 축구기업

7.2.2 AFC 챔피언스 리그 및 K리그 참가를 위한 2년룰

(Two years rule for the AFC Champions League and K LEAGUE) :

7.2.2.1 AFC 챔피언스 리그 및/또는 K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회원 자격 및/또는 계약적 관계가 라이선싱 절차의 시작 시점부터 최소 2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7.2.2.2 스포츠 성적에 대한 자격을 용이하게 하거나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적형태 또는 기업구조의 변경(다른 법인과의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축구 활동의 이전) 또는 정체성 (본사, 사명, 또는 클럽 색상)은 회원자격 또는 본 조항의 의미에 포함되는 계약적 관계의 중단으로 간주된다.

7.2.3 라이선스 신청자는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및 클럽 라이선싱 기준 이행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갖는다.

7.2.4 라이선스 신청자는 특히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a) 본 규정 내 스포츠, 시설, 인사 및 행정, 법무, 재무 기준과 관련된 라이선싱 의무 이행을 증빙하는 모든 필요 정보 및/또는 서류를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한다;
- b) 라이선스 발급자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 c) 상기 해당 정보는 스포츠, 시설, 인사 및 행정, 법무 및 재무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보고의무를 가진 법인에게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d) 라이선싱 서류 제출 후 기존 제출된 정보에 상당한 변화에 해당되는 사건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일어난 경우 이를 즉시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법인 형태, 법인 그룹 구조 또는 정체성의 변화가 이에 해당된다;
- e)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서류는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주요평가절차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7.3 라이선스 (License)

7.3.1 원칙 (Principle)

7.3.1.1 라이선스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의 조항에 따라 발급되며, 다음의 라이선스가 부여된다.:

- a) AFC 챔피언스 리그 라이선스(AFC Champions League License) – AFC 챔피언스 리그 및 K리그 참가 자격
- b) K리그 라이선스(K LEAGUE License) – K리그 참가 자격

7.3.1.2 직전 시즌 국내대회 성적을 통해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가 가능한 클럽은 7.4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자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7.3.1.3 라이선스 발급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스 신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신청 안내를 공지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클럽(라이선스 신청자)은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제출을 통해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싱 제도 내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신고해야 한다.

7.3.1.4 본 규정 내 명시된 기준을 라이선스 발급자와 AFC가 지정한 마감일 내 이행을 완료하고, 클럽의 대회성적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클럽만이 다음 시즌 K리그 및/또는 AFC 챔피언스 리그를 참가할 수 있다. 해당 대회 규정 내 기타 다른 요건 역시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7.3.1.5 라이선스는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만료된다.:

- a) 라이선스가 발급된 시즌이 끝난 시점(Licensing Season); 또는
- b) 해당 디비전의 해체 시.

7.3.1.6 라이선스는 양도될 수 없다.

7.3.1.7 다음의 경우, 라이선스는 시즌 중 AFC 또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a)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일부 조건 불충족 시; 또는

b) 라이선스 소지자가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 또는/ 및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 내 의무사항을 위반 시

7.3.1.8 라이선스 취소가 예상되는 즉시, 연맹은 이를 즉시 AFC에 통보해야 한다.

7.3.1.9 AFC는 적용 가능한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AFC Club licensing regulations) 및 AFC 징계 규정(AFC Disciplinary Code)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맹은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및 상벌 규정을 통해 클럽을 제재하거나 향후 K리그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7.4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 (Admission to AFC Champions League)

7.4.1 원칙 (Principle)

7.4.1.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 승인을 위해 해당 AFC 챔피언스 리그 규정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4.1.2 AFC Entry Control Body가 라이선싱 신청자의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해당 결정은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AFC Entry Control Body에 따라 결정된다.

7.4.1.3 중재 재판소로서 스위스 로잔 소재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결정은 AFC의 정관상 AFC 관할 사항이다.

7.4.2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Entering AFC Champions League)

7.4.2.1 국내대회 성적을 통해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 자격을 갖춘 클럽이 라이선싱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거나, 해당 AFC 챔피언스 리그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낮거나 상응하지 않는 라이선싱 절차를 진행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클럽을 대신하여 '별첨3'에 따라 클럽라이선싱시스템의 임시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7.4.2.2 실례로, K리그에 속하지 않은 클럽이 국내 중요 컵대회(예, FA컵)를 우승한 경우, 임시신청을 해당 클럽에 적용할 수 있다.

7.4.2.3 해당 임시신청을 근거로, AFC는 해당 AFC 클럽대회 규정에 의거해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특별 승인할 수 있다. 해당 임시신청은 해당 특정 클럽 및 대상 시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7.4.2.4. AFC Entry Control Body는 이와 관련해 모든 AFC의 최종 결정을 진행한다. 해당 결정은 Procedural Rules Governing the AFC Entry Control Body에 의거한다.

7.5 K리그 참가 (Admission to K LEAGUE)

7.5.1 원칙 (Principle)

7.5.1.1 원칙적으로, 모든 클럽은 K리그 참가 승인을 받기 이전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K리그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5.1.2 상기 7.5.1.1조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라이선스 취득에 실패한 클럽에 대한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클럽은 벌금이나 승점 감점을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5.1.3 본 규정은 연맹의 정관, 상벌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7.6 K리그 참가 : 신규 가맹 클럽에 대한 클럽 라이선싱

(Admission to K LEAGUE : Club Licensing for newly affiliated clubs)

7.6.1 원칙 (Principle)

7.6.1.1 연맹 회원으로 신규 가입한(또는 가입 예정인) 클럽은 ‘별첨 4’에 따라 반드시 K리그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8조 (Article 8) : 주요평가절차 (The Core Process)

8.1 소개 (Introduction)

본 장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평가 절차(이후 ‘주요평가절차’)를 정의한다.

8.1.1 원칙 (Principle)

8.1.1.1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기준을 라이선스 발급자와 AFC에 증빙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8.1.1.2 주요평가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된 기준(스포츠 기준, 시설 기준, 인사 및 행정 기준, 법무 기준 및 재무 기준)의 증빙 절차와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관리에 대해 정의한다.

8.1.1.3 AFC 챔피언스 리그 :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규정한 시기에 시작하며, AFC가 지정한 마감일까지 AFC 사무국에 라이선싱 결정에 대한 목록(List of licensing decisions)을 제출하며 종료된다.

8.1.1.4 K리그 :

주요평가절차는 라이선스 발급자가 규정한 시기에 시작하며, 라이선스 발급자가 지정한 마감일 까지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싱 결정을 통보하며 종료된다.

8.1.1.5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 a) 라이선스 발급자의 필요와 조직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싱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돕고;
- b) AFC 챔피언스 리그 및 K리그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 라이선스 발급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요건에 동의하며;
- c) 독립기구에 의해 클럽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 d) 의사결정기구가 라이선스 발급자의 라이선싱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8.1.1.6 주요평가절차는 다음을 최소 주요 단계로 포함하여 구성된다.:

- a)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라이선싱 서류를 배포;
- b) 라이선싱 기준 준수를 증빙하기 위한 라이선싱 서류 제출;
- c) 라이선싱 행정부에 의한 제출 서류의 평가;
- d)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평가 및 결정;
- e) AFC 사무국에 라이선싱 결정 리스트의 제출.

8.1.1.7 상기 주요절차에 대한 마감일은 라이선스 발급자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 후 해당 클럽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8.1.1.8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기준 이행과 작성된 서약서 및 서류의 진실성의 증빙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의무이며, 모든 입증 책임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있다.

8.1.1.9 마감 및 제출 일자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모든 마감일 및 제출일을 결정할 책임을 가진다. 지정된 마감일 이내 클럽라이선싱 행정부에 적절한 시점에 모든 원본 서류, 증빙 서류 및 필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책임이다. 제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수신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마감기한 내 클럽라이선싱 행정부가 양식, 서류 및 증빙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8.1.1.10 주요평가절차는 명확성을 목적으로 아래 3단계로 구분된다.:

- a) 신청 단계(Application phase) : 라이선스 신청 단계 및 의사결정절차로 이어지는 단계를 포함;
- b) 의사결정 단계(Decision making phase) : 가능한 향소를 포함한 세부 의사결정 절차;
- c) 준수 단계(Compliance phase) : 전체 라이선스 기간 동안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명시.

8.2 과정 및 절차 (Process and Procedures)

8.2.1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 승인을 위해 AFC가 지정한 마감일을 고려하여 주요평가절

차의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8.2.2 라이선스 발급자는 규정과 매뉴얼을 기초로 평가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8.2.3 연간 일정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요건	마감일
1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클럽에게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연맹에 제출할 것을 요청	회람을 통한 별도 통보
2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통보 (첨부된 양식 사용)	
3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K리그 클럽 라이선싱 템플릿을 제작하여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배포	
4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해당 증빙자료가 포함된 서류(설문지, 템플릿 등)를 작성 완료하여, AFC 클럽 라이선싱 행정 시스템(CLAS)을 통해서 제출. 출력물, 인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출된 서류는 불인정	
5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전체 기준에 대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 또는 기존 제출된 서류의 수정 등을 권고하는 서면 피드백을 준비	
6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라이선싱 행정부의 권고에 따른 서류 재제출	
7	라이선싱 행정부 실사 진행	
8	클럽라이선싱 행정부는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FIB에 제출	
9	FIB는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 및/또는 K리그 라이선스 발급/미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서면 결정문을 각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발송	
10	FIB 결정에 이의가 있는 라이선스 신청자는 FIB 결정문 수신 7일 이내 사유를 명시하여 라이선싱 행정부에 서면으로 항소	
11	AB는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림. 항소인에게 서면 결정문 발송	
12	라이선싱 행정부는 AFC에 라이선스 발급 및 발급거부 결과를 통보	

8.3 언어 (LANGUAGES)

규정 내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 라이선스 신청자는 각 기준에 대한 모든 서류, 정보 및 증빙 자료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언어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법률번역을 완료할 책임을 갖는다.

9조 (Article 9) : 스포츠 기준 (Sporting Criteria)

S.01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육성프로그램 Youth Development Programmes (YDP)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승인받은 문서화된 선수육성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자는 이를 승인함에 있어 해당 선수육성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평가해야 하며, 유소년팀의 훈련장 및 경기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선수육성프로그램에는 최소 아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목표, 유소년팀의 경기 철학 및 유소년 육성 철학; b) 유소년 육성 부문 조직구성 (조직도, 관계 기구, 라이선스 신청자와의 관계, 해당 유소년 팀 등); c)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인적자원 구성(기술, 의료, 행정 부문 등); d) 유소년 육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시설 (훈련 및 경기 시설 등); e) 재정 지원 (가용 예산, 라이선스 신청자, 선수 및 지역사회 후원 등); f) 각 연령대별 축구 교육 프로그램 (심리, 기술, 전술 및 체력); g) 교육 프로그램 (경기규칙, 도핑방지, 부정방지, 인종차별); h) 유소년 선수에 대한 의료지원 (건강검진 포함); i) 프로그램 내 개별 선수 성과 평가; j) 평가 결과 및 목표 성취도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전달 절차; k) 프로그램 유효 연한 (최소 3년 이상 최대 7년 이내). 		
3.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유소년 선수들이 국내법에 따라 의무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b)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내 참가하는 유소년 선수들이 그들의 비(非)축구 교육을 지속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S.02 기준 설명	ACL	K리그
유소년 팀 Youth Team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법인,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다른 법인 또는 법인 산하 클럽 내 소속된 유소년 클럽을 최소한 아래와 같이 보유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만 15세에서 21세 사이 연령대 내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연령대 그룹의 유소년 팀; b) 만 10세에서 14세 사이 연령대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유소년 팀; c) 만 10세 미만의 최소 1개 이상의 어린이 팀; d) 만 10세 미만의 팀을 제외한 각 유소년 팀은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하는 전국, 권역 또는 지역 단위의 공식대회 또는 축구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S.03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에 대한 의료지원 Medical Care of Player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선수들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해당 지원 내역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1군 선수단에 소속된 모든 선수에 대한 심혈관 검사를 포함한 연간 의료검진; b) 만 12세 이상의 모든 선수에 대한 연간 건강검진; c) 계약된 선수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		

S.04 기준 설명	ACL	K리그
계약 체결 코칭스태프에 대한 의무지원서비스 Medical Care of Coaching Staff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에 등록된 모든 코칭스태프에게 종합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클럽의 1군에 대한 기술적 능력에 관여하는 감독 및 코치 등에 대한 심혈관 검사를 포함한 연간 의료검진; b) 계약된 코칭스태프에 대한 종합의료보험 보장. 2. 본 기준의 목적을 위해, ‘코칭스태프’라는 용어는 다음 사람들을 포함한다.: •감독, 코치, GK코치 및 피지컬 코치		

S.05 기준 설명	ACL	K리그
교육프로그램 Educational Programme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최소 1군 선수 및 모든 코칭스태프가 다음의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스포츠 청렴성 (부정방지); b) FIFA 경기규칙; c) 도핑방지; d) AFC / 연맹이 요구하는 기타 사안. 2. 본 과정 또는 행사는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시즌의 개막 전 연 단위로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연맹과 공동으로 제3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S.06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등록 Registration of Players	B	B

1. 라이선스 신청자의 만 10세 이상의 유소년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는 FIFA 선수 이적과 지위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및 산하 리그에 등록되어야 한다.

S.07 기준 설명	ACL	K리그
인종 평등 실천 Racial Equality Practice	B	B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축구 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선수 및 스태프는 인종차별 정책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정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S.08 기준 설명	ACL	K리그
유소년 저변확대(풀뿌리) 프로그램 Grassroots Programmes	B	B

1. 저변확대 프로그램 참가자는 어린이, 청소년, 아마추어 선수, 참전 군인, 학습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의 저변확대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축구 경기에 대한 더 큰 관심 고조, 사회적 포용에 대한 더 많은 기회 제공, 스포츠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발전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S.09 기준 설명	ACL	K리그
어린이 보호 및 복지 Child Protection and Welfare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관련 AFC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잠재적인 학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라이선스 신청자가 개최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축구를 통한 웰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연고지역 기반의 어린이 보호 전문가와 협업하며, 어린이 보호 정책 수립을 포함한 해당 조치를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해 사무국 내 어린이 보호 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S.10 기준 설명	ACL	K리그
여자 축구팀 Women's Team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법인 또는 보고 범위 내 소속된 다른 법인이 운영 중인 하나 이상의 여자 축구팀을 보유해야 한다.
2. 여자 축구팀은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하는 전국, 권역 또는 지역 단위 공식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S.11 기준 설명	ACL	K리그
사회공헌활동(CSR) 프로그램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rogrammes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과 홈경기를 홍보하고, 축구와 지역사회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2. 지원은 라이선스 신청자, 협회, 연맹, AFC 및 FIFA 등에 의해 공표된 전략 및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계획 및 캠페인 등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팬 베이스의 확립 및 확장; b) 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c) 지역 사회 내 청소년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 활동, 계획 및 행사; d) 지역 사회와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 e) 브랜딩, 머천다이징, 후원사 및 마케팅 파트너를 위한 시장기반 구축. 		

S.12 기준 설명	ACL	K리그
클럽 유스 아카데미 Club Youth Academy	C	C
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Elite Youth Scheme에 기술된 필요한 기반시설 및 시설물을 갖춘 클럽 유스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한다.		

10조 (Article 10) : 시설 기준 (Infrastructure Criteria)

I.01 기준 설명	ACL	K리그
대회 개최에 적합한 승인된 경기장 Approved Stadiums for AFC Champions League and/or K LEAGUE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AFC 챔피언스 리그 및 K리그 경기를 개최 가능한 경기장을 보유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유권을 가진 경기장; 또는 b) 경기장 소유주와 향후 사용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계약서는 라이선스 신청자가 대회참가자격을 갖춘 다음 시즌의 AFC 및 K리그 경기 시, 사용을 보장해야한다. <p>2. 경기장은 다음 규정을 명확히 참조하여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FC / K리그 경기장 규정; 그리고 b) AFC 챔피언스 리그 대회 규정, AFC 대회 운영 매뉴얼(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 c) K리그 규정, 대회요강 및 매뉴얼. <p>3. 경기장은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연고지와 같은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만일 경기장이 라이선스 소지자의 연고 도시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p>		

I.02 기준 설명	ACL	K리그
경기장 - 안전 인증서 Stadium - Safety Certification	A	A
<p>1. 경기장은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인증서는 국내/지방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안전관련 기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만일 해당 법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경기장 인증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하며, 적절한 기관과의 밀접한 협업을 통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예, 지역 안전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 등)</p> <p>2. 인증서는 AFC 안전 규정(AFC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내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경기장 구조의 안전 상황 및 건축물의 적합성; b)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의 안전/보안 규정에 대한 준수성 확인 문구; c) 경기장 전체 수용인원에 대한 승인 (개별석, 테라스석 및 전체 숫자); d) 해당 국내법에 따른 비상시 전체 경기장을 비울 수 있는 승인된 대피 계획; e) 가능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표시된 층별 계획도는 경기장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f) 티켓 발권 시스템, 입장 관중 스크리닝, 동선분리 계획, 관중 분산 계획, 의료지원 및 화재, 정전 및 기타 응급상황에 대비한 조치 계획 등 경기 운영의 모든 영역에서의 안전 계획을 확보할 목적의 승인된 안전 계획. <p>3. 관계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는 최대 2년간 유효하며, 라이선싱 시즌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p>		

I.03 기준 설명	ACL	K리그
경기장 - 승인된 대피 계획서 Stadium – Approved Evacuation Plan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기관(예, 안전 및 보안 당국, 유관 행정기관 또는 다른 인증된 기관 등)은 해당 법규에 따라 비상상황에서 경기장 내부 전체로부터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대피계획을 승인한다. 2.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라이선스 발급자는 적절한 민간기구(예, 지역 안전 당국, 지역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피시간 및 승인가관을 포함한 대피계획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3. 가능 대피 경로를 보여주는 색상으로 표시된 층별 계획도는 경기장 내 눈에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분석 5. 안전담당관, 안내요원 및 클럽과 경기장 직원에게 대피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I.04 기준 설명	ACL	K리그
이용 가능한 훈련시설 Training Facilities – Availability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연중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체 훈련시설의 보유; 또는 b) 훈련시설 소유주와의 서면계약서 제출. 2. 라이선스 기간 중 라이선스 신청자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까지 고려하여 산하의 모든 팀이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05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 시설 - 최소 기반시설 Training Facilities for Player Development – Minimum Infrastructure	B	B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 육성을 위한 기반 훈련 시설은 최소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실외 훈련 시설; b) 실내 훈련 시설; c) 선수대기실; d) 의료실 또는 훈련장 내 즉각적인 응급처치 시설. 		

I.06 기준 설명	ACL	K리그
경기장 - 그라운드 수칙 Stadium – Ground Rules	B	B
<p>1. 각 경기장은 경기장 그라운드 수칙을 갖추어야 하고, 관중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 이를 부착해야 한다. 본 규정은 최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입장 권리; b) 행사 포기 및 연기; c) 그라운드 난입, 이물질 투척, 저속한 또는 과도한 욕설, 인종차별 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술; d) 흡연, 음주, 화약류 사용, 현수막 등과 관련된 제한 사항; e) 좌석 규칙; f) 경기장에서 퇴장 사유. 		

11조 (Article 11) : 인사 및 행정 기준 (Personnel and Administrative Criteria)

P.01 기준 설명	ACL	K리그
구단 사무국 Club Secretariat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행정 업무 진행에 필요한 필요 시설을 갖춘 충분한 공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는 일일 업무 운영에 필요에 따라 충분한 인원의 숙련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3. 사무실은 라이선스 발급자 및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등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최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02 기준 설명	ACL	K리그
단장 General Manager / CEO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일일 업무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는 단장을 임명해야 한다. (클럽운영관련 업무) 2. 해당 임명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예,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P.03 기준 설명	ACL	K리그
재무담당관 Finance Office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재무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재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재무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회계, 재무 또는 관련 분야 학위; 또는 b) 라이선스 발급자가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자격인증서'		

P.04 기준 설명	ACL	K리그
안전담당관 Security Office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안전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안전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안전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국내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증 또는 경비(경호) 관련 자격증; 또는 b) 연맹 또는 지방인정기관에 의해 발급된 안전 및 보안 관련 세부 과정에 대한 수료증; 또는 c)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과 연맹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세부 과정 참석을 통해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승인된 '자격인증서'		

P.05 기준 설명	ACL	K리그
언론담당관 Media Office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언론 분야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언론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2. 언론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언론학 분야 학위; 또는 b) 연맹으로부터 인정된 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언론담당자 교육과정 수료; 또는 c)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 및 라이선스 발급자로부터 승인된 '자격 인증서'.		

P.06 기준 설명	ACL	K리그
주치의 Medical Doctor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경기 및 훈련 중 의료지원 및 도핑예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주치의를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2. 주치의의 자격증은 해당 국내 보건당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주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P.07 기준 설명	ACL	K리그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훈련 및 경기 중 1군 선수의 치료 및 마사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 물리치료사를 1명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2. 물리치료사의 자격증은 국내 해당 보건당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물리치료사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P.08 기준 설명	ACL	K리그
1군 감독 Head Coach of First Team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임명해야 한다.</p> <p>2. 1군 감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명시된 감독 최소자격기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b) 1군팀 감독이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를 소지해야한다.; 또는 c)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p>3. 감독은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p>		

P.09 기준 설명	ACL	K리그
1군 코치 Assistant Coach of First Team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1군의 축구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지원하며,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p> <p>2. 1군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명시된 코치 최소자격기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b) 1군팀 코치가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Recognition of Experience and Current Competence)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를 소지해야한다.; 또는 c)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p>3. 1군 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p>		

P.10 기준 설명	ACL	K리그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 Head of Youth Development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YDP)을 포함해 유소년 육성 분야의 모든 면의 관리 및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2. 유소년 육성 총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 “A”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b)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c)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 d)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활동, 역할 및 책임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뛰어난 관리 및 행정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P.11 기준 설명	ACL	K리그
유소년 코치 Youth Coaches	A	A
1.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각 유소년팀에 대해 라이선스 신청자는 해당 팀의 축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유소년 코치를 한 명이상 임명해야 한다. 2. 최소 2명 이상의 유소년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a) AFC “B” 지도자 자격증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상응하는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b) 구체적인 유소년 지도 경력 및 유소년 선수의 지도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 증명서/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c) 기타 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엘리트 유소년 선수의 육성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3. 나머지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가 규정한 최소 지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AFC “C” 지도자 자격증 이상 또는 협회가 승인하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4. 유소년 지도자는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		

P.12 기준 설명	ACL	K리그
안전 및 보안 준비 - 진행요원 배치 Safety and Security Organisation - Stewarding	A	A
1. 라이선스 신청자는 홈경기 시,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진행요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진행요원의 고용; 또는 b) 경기장 소유자 또는 외부업체와 진행요원 제공에 대한 서면 계약 체결		

P.13 기준 설명	ACL	K리그
권리, 책임 및 의무 Right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A	A
1. 본 규정 내 서술된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원들에 대한 권리, 책임 및 의무사항은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P.14 기준 설명	ACL	K리그
라이선싱 시즌 중 직무 대체 Duty of Replacement during the Licensing Season	A	A
1. 라이선싱 시즌 중 본 규정 내 적절한 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공백이 생긴 경우, 라이선스 소지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이를 인계받아야 한다.		
2. 만일 일부 직무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해당 인원이 의학적으로 여전히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60일을 연장해줄 수 있다.		
3. 공석의 발생 및 대체는 해당 상황 발생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P.15 기준 설명	ACL	K리그
법률 고문 Legal Advisor	B	B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제반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 처리에 책임을 갖는 자격을 갖춘 법률 고문을 임명해야 한다.		
2. 법률 고문은 필요한 법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16 기준 설명	ACL	K리그
클럽 기술이사 Club Technical Director	B	B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 기술이사를 고용해야 한다.</p> <p>2. 기술이사는 최소 AFC “A”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프로클럽 등에서의 폭넓은 선수 및 업무 경력 또는 선수, 지도자, 관리직 또는 고문 등으로서 클럽의 구성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경력과 같은 추가 자격사항이 요구된다.</p> <p>3. 기술이사는 뛰어난 관리 능력을 갖춘 자로, 비전을 제시하고 클럽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p> <p>4. 기술이사는 최소한 다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클럽 철학의 수립 및 실행; b)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구조 및 프로그램 마련; c) 기술(기량) 기준 유지 및 강화 확립; d) 모든 기술 및 발전 프로그램의 평가 및 관찰; e) 우수 선수의 스카우팅; f) 클럽의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g) 지도자 및 선수 스카우터의 채용 및 관리; h) 경기분석과정의 관리. 		

P.17 기준 설명	ACL	K리그
1군 골키퍼코치 Goalkeeper Coach of First Team	B	B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1군 골키퍼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p> <p>2. 1군 골키퍼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협회 지도자 교육 규정에 명시된 GK코치 최소자격기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b) 1군 골키퍼코치가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RECC)’를 소지해야 한다.; 또는 c)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p>3. 1군 골키퍼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p>		

P.18 기준 설명	ACL	K리그
1군 피트니스코치 Fitness coach of First Team	B	B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유효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격을 갖춘 1군 피트니스 코치를 임명해야 한다.</p> <p>2. 1군 피트니스 코치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FC Competition Operations Manual에 명시된 지도자 최소 자격 요건(Minimum Coach Education Requirement, MCER)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b) 1군 피트니스코치가 상기 a)에 따라 정의된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RECC 규정에 따라 AFC가 발급하는 ‘경력 및 현재 자격 인증서(RECC)’를 소지해야 한다. ; 또는 c) 상기 a)에 정의된 필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 AFC가 인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중이어야 한다. <p>3. 1군 피트니스코치는 협회 및 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자의 적절한 기구로부터 직책이 부여되어야 한다.</p>		

12조 (Article 12) : 법무기준 (Legal Criteria)

L.01 기준 설명	ACL	K리그
AFC 챔피언스 리그 및 K리그 참가에 대한 서약서 Declaration in respect of the participation in AFC Champions League and K LEAGUE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 규칙, 규정 및 결정 그리고 AFC 정관 내 관련 조항에 의거 스위스 로잔 소재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의 관할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지한다.; b) 국제적인 차원, 특히 FIFA 및 AFC와 연루된 분쟁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스위스 로잔 소재)의 독점 관할권을 인정한다.; c) FIFA 및 AFC 정관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의 항소는 금지됨을 인정 한다.; d) 국내대회의 경우, 협회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예, K리그, FA컵 등); e) 국제대회의 경우, AFC 및 FIFA로부터 승인 및 인정받은 대회를 출전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조항은 친선경기와는 무관하다.; f)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의 조항 및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따르는 것을 동의한다.; g) 보고 범위는 본 규정 13.1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단체의 본 서약서에 대한 준수 및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h) 모든 제출서류는 온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i) 라이선스 발급자 및 AFC 서류 검토 및 정보 수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 절차 시, 기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국내법에 따른 사설기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j) 본 규정 14.3조에 의거 AFC는 국내 수준의 준수성 감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p>2. 본 서약서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해당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에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 완료되어야 한다.</p>		

L.02 기준 설명	ACL	K리그
법적서류 Legal Document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재 회사 규약, 사규,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회사 관리에 대한 문서의 사본; b) 라이선스 신청자가 최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법인'임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등록된 법인명; ii. 구단명; iii. 본사 주소; iv. 법적형태; v. 공인된 서명자 명단; vi. 서명형태 (개별서명, 공동서명 등). c) (해당 시) 협회 산하 대회 참가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 신청자와 관련 구성 단체간 협약서. 		

L.03 기준 설명	ACL	K리그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권 Ownership and Control of Club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클럽의 소유권 및 지배 방식을 기술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수립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p> <p>클럽의 경영, 행정 및 스포츠 성과에 자연인 또는 법률인이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활동에 개인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권 및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 b)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 투표권의 다수를 차지; c)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행정, 경영 또는 감독 기구의 구성원 다수를 임명하거나 해고하는 권리; d) 클럽의 주주인 동시에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타 클럽 주주들의 투표권 다수를 단독으로 통제; e)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 f)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및 스포츠적 성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이라도 관여; g) 동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및 스포츠적 성과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보유. <p>2. 본 서약서는 라이선스 발급자의 해당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에 공인된 서명을 통해 작성 완료되어야 한다.</p>		

L.04 기준 설명	ACL	K리그
법적 그룹 구조 및 최종통제기구 Legal Group Structure and Ultimate Controlling Party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라이선스 신청서 제출의 법정 마감일 전에 법적 그룹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경영진이 정식으로 승인한 차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차트를 제출한 날짜와 법정 마감일 사이 기간 중 법적 그룹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 시, 이를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2. 해당 서류는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스 신청자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b)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회사, 자회사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c) 라이선스 신청자의 계열사, 계열사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d) 라이선스 신청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 최종적으로 최종통제기구까지 포함; e) 라이선스 신청자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보유중이거나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중인 기구 f) 라이선스 신청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 g) (a)에서 (f)까지 정의된 기구 또는 해당 주요 경영진이 소유권의 지분, 의결권, 재정적·운영적 정책 관리방식에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력이나 연관성을 가지는 기타 다른 축구 클럽; h) 규정 13.1조에 정의된 보고 범위는 본 문서 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한다. <p>3. 관련성이 있을 경우, 라이선스 발급자는 위에 나열된 목록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 제출을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 자회사, 최종통제기구의 계열사, 직접통제기구 관련 정보)</p> <p>4. 법적 그룹 구조 내 포함된 모든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법인명; b) 법인형태; c) 법인의 주요 활동; d) 소유권 지분의 비율 (소유권과 의결권 보유 비율이 다를 시, 의결권 보유 비율 포함) <p>5.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자회사와 협회 내 등록 회원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식자본; b) 총 자산; c) 총 수익; d) 총 자본 		

L.05 기준 설명	ACL	K리그
프로선수와의 서면계약서 Written Contract with Professional Players	A	A
1. 라이선스 신청자의 프로선수는 'FIFA 선수자격과 이적에 대한 규정' 내 관련 조항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 내에는 FIFA, AFC, 협회 및 연맹이 요구하는 모든 주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L.06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 및 스태프에 대한 징계 절차 및 행동 규범 Disciplinary Procedure and Code of Conduct for Players and Officials	B	B
1. 라이선스 신청자는 관련 국내법, FIFA, AFC, 협회 및 연맹의 정관에 따라 선수 및 스태프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2. 행동규범은 행동규범, 클럽 규칙, 클럽 규정 위반 시 법적으로 유효한 징계 규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클럽 결정으로 기소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13조 (Article 13) : 재무 기준 (Financial Criteria)

13.1 보고 실체 및 보고 범위

a) 라이선스 신청자는 보고 범위를 결정하고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재무정보(단일법인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 관점에서 관련된 법인 또는 법인의 조합에 대한 정보가 해당된다.

b) 보고 범위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i. 라이선스 신청자, 라이선스 신청자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 ii.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회사, 자회사명과 협회 내 등록된 회원명이 다를 경우, 등록된 회원 정보 포함
- iii. 아래 c) iii부터 x에 정의된 축구관련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 서비스 시행, 비용을 발생 시키는 법인 그룹에 포함된 기타 법인
- iv. 아래 c) i 부터 ii에 정의된 축구관련 활동에 대한 수익 창출, 서비스 시행, 비용을 발생 시키는 법인 그룹 포함여부와 관련 없는 기타 법인

c) 축구관련 활동은 아래를 포함한다.

- i.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에 따라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형태의 급여 지불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계약 직원 (F.04에 정의);
- ii. 선수 영입 및 타 팀 이적 (임대 포함);
- iii. 티켓 판매;
- iv. 스폰서십 및 광고;
- v. 방송중계;
- vi. 머천다이징 및 호스피탈리티;
- vii. 클럽 운영 (예, 행정, 홈경기 운영, 출장, 스카우팅, 등);
- viii. 파이낸싱 (재정 확보 또는 라이선스 신청자의 자산에 대한 담보 포함)
- ix. 경기장 및 훈련시설의 이용 및 운영
- x. 유소년 육성

d)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은 보고 범위에서 제외된다.:

- i. 상기 c)에 정의된 축구관련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 및/또는 축구 클럽의 위치, 자산 또는 브랜드; 또는
- ii. 보고 범위에 포함되나 상기 c) i 부터 ii까지 정의된 축구관련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법인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법인; 또는

iii. 시행중인 축구 관련 활동이 이미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법인 중 하나의 재무제표 내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

e) 라이선스 신청자는 아래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서명된 약속서를 제출해야 한다.

- i. 상기 c)에 명시된 모든 축구관련 활동 각각에 관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보고 범위 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세부 내역서를 제출;
- ii. 보고 범위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법인이 그룹 구조 내 포함된 기업인지 여부와 상기 d)와 관련된 이 유로 보고 범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3.2 필수 보고기간, 보고 및 회계 형식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뿐만 아니라 아래의 각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은 AFC 클럽 라이선스 파이낸셜 핸드북 (“핸드북”)을 참조할 수 있다.

F.01 기준 설명	ACL	K리그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s - Audited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적 구조와 관계없이, 주식회사에 대한 국내법을 기초로 결산재무제표가 준비되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가 수행되어야 한다.</p> <p>2.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는 AFC로 라이선싱 결정 목록 제출 마감일의 직전 회계연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차대조표; b. 손익계산서; c. 현금흐름표; d. 주요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주석 및 비고(설명문); e. 경영진에 의한 재무검토. <p>3.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는 AFC 클럽라이선싱 파이낸셜 핸드북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p> <p>4.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가 AFC 클럽라이선싱 파이낸셜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추가 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회계감사관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p>		

F.02 기준 설명	ACL	K리그
검토된 반기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Interim Period – Reviewed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의 회계연도 마감일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클럽 명단의 AFC 제출 마감일’ 보다 6개월 이상 앞서는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반기 기간을 다루는 추가 재무제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p> <p>2. 반기 재무제표를 준비 및 제출한 경우,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클럽 리스트의 AFC 제출 마감일’ 보다 앞선 6개월 이내까지의 반기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외부 회계감사관을 통한 검토 및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p> <p>3. 반기 재무제표는 AFC 클럽라이선싱 파이낸셜 매뉴얼에 규정된 회계원칙 및 최소공시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p>		

F.03 기준 설명	ACL	K리그
선수이적을 통해 발생한 타 축구클럽에 대한 지급금 미연체 No Overdue Payables towards Football Clubs arising from transfer activitie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전년도 ①6월 30일(K리그 라이선스), ②12월 31일(ACL 라이선스)까지 선수이적 관련 활동에 의해 발생한 타 축구클럽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하며, 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후 ①대상 시즌의 전년도 8월 31일(K리그 라이선스), ②대상 시즌의 해당년도 3월 31일(ACL 라이선스)까지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급기한을 연기해야 하며 또는 근거가 명확치 않은 분쟁 상황으로 분쟁조정을 위해 주무관청에 접수된 상태여야 한다.</p>		

F.04 기준 설명	ACL	K리그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관/국세청 등에 대한 지급금 미연체 No Overdue Payables towards Employees and social / tax authorities	A	A
<p>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대상 시즌의 전년도 ①6월 30일(K리그 라이선스), ②12월 31일(ACL 라이선스)까지 계약적, 법적 의무의 관점에서 전현직 피고용인 및 사회보장기구/국세청에 대한 지급금이 연체되지 않았음을 증빙해야 하며, 해당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후 ①대상 시즌의 전년도 8월 31일(K리그 라이선스), ②대상 시즌의 해당년도 3월 31일(ACL 라이선스)까지 채권자와 양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지급기한을 연기해야 하며 또는 근거가 명확치 않은 분쟁 상황으로 분쟁조정을 위해 주무관청에 접수된 상태여야 한다.</p> <p>2. “피고용인” 용어는 최소 다음을 포함한다.:</p> <p>a) ‘FIFA 선수 자격과 이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프로선수; 및</p> <p>b) 클럽 라이선싱 규정 내 명시된 행정적, 기술적, 의료 및 안전 담당자</p>		

F.05 기준 설명	ACL	K리그
라이선싱 결정전 진술서 Written Representations prior to the Licensing decision	A	A
<p>1.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를 통한 라이선싱 결정 7일전 이내,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해당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p> <p>2. 진술서를 통해 아래 사실이 이상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제출된 모든 서류는 온전하며 정확하다.; b) 모든 라이선싱 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 c) 직전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또는 검토된 반기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의 기준 날짜 이후 라이선스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 시, 경영진 진술서에는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및 이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여 서술하거나 해당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d) 라이선스 신청자 (또는 7.2.2조에 규정되어 있는 라이선스 신청자와 계약적 관계를 가진 협회의 등록 회원) 또는 보고 범위 내 포함된 라이선스 신청자의 모기업이 라이선스 시즌 직전 12개월 이내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 채권자 보호를 구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p>3. 경영진의 승인은 라이선스 신청자의 집행 기구를 대표하여 서명의 형태로 증빙되어야 한다.</p>		

F.06 기준 설명	ACL	K리그
미래재무정보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A	A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라이선스 신청자는 라이선스 시즌이 끝날 때 까지 구단운영에 대한 현상 유지가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미래 재무 정보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라이선스 신청자는 지표1 또는 지표2에 서술된 조건과 관련하여 특이점이 확인될 경우, 이는 해당 지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지표1 : 계속기업 기준 F.01 및 F.02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내 계속기업과 관련해 단서가 붙는 의견/결론 또는 관련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 b) 지표2 : 역사산 기준 F.01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전년도 회계 감사 재무제표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내거나, 기준 F.02에 따라 제출된 반기 재무제표 (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직전 회계마감일 시점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낼 경우 3. 미래 재무 정보는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의 회계마감일 직후 시작되는 기간 또는 해당 시, 반기 재무제표 내 대차대조표 상의 기준 날짜 직후 시작되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라이선스 시즌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4. 미래 재무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해당 시)의 수치 대비 예산된 손익계산서; b) 직전 회계연도 및 반기(해당 시)의 수치 대비 예산된 현금유동성(현금흐름); c) 예산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와 미래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에 대해 대비한 주요 추정치(역사적 재무 및 기타 정보의 관련 측면을 참고로 한)의 각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주석. 5. 미래재무정보는 최소 분기별로 준비되어야 한다. 6. 미래재무정보는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를 기초로 준비되어야 하며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방침을 따라야 한다. 단, 가장 최근의 연간 재무제표 날짜 이후 다음 연간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위한 회계방침 변경은 제외하며, 이 경우 세부 변경내용이 반드시 공표되어야 한다. 7. 미래재무정보는 AFC 클럽 라이선싱 매뉴얼에 명시된 최소 공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명확한 설명 또는 생략에 따라 미래재무정보를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경우 추가 항목 또는 주석을 포함해야 한다. 8. 추정치를 기초로 하는 미래재무정보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간단한 설명 및 보고 실체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서명 등의 형태로 증빙되어야 한다. 		

후속 정보 (Subsequent Information)

F.07 및 F.08 기준은 라이선싱 결정 이후에도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07 기준 (후속 사건 통지 의무)는 모든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F.08 기준(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은 하나 이상의 지표 위반이 확인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만 적용된다.

F.07 기준 설명	ACL	K리그
후속 사건 통지 의무 Duty to notify subsequent events	A	A
1.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라이선싱 결정 후, 라이선스 소지자는 최소한 라이선스가 승인된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구단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후속 사건 발생 시, 이를 즉시 라이선스 발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라이선스 주기에 있어서 본 기준의 준수는 라이선스 발급자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F.08 기준 설명	ACL	K리그
미래재무정보의 최신화 의무 Duty to update Future Financial Information	A	A
1. 라이선스 소지자가 아래 지표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한 이후, 라이선스 소지자는 미래재무정보를 최신화하여 제출해야한다. (기준 F.06에 따라 준비) 추가적으로, 준비된 정보는 차이 발생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실제 수치와 예산간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미래재무정보의 수정본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준비되어야 한다. 지표1 : 계속기업 기준 F.01 및 F.02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내 계속기업과 관련해 단서가 붙는 의견/결론 또는 관련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 지표2 : 역자산 기준 F.01에 따라 제출된 연간 회계 감사 재무제표 (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전년도 회계 감사 재무제표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내거나, 기준 F.02에 따라 제출된 반기 재무제표(필요 시, 추가 정보를 포함) 내 직전 회계마감일 시점의 수치 대비 악화된 순부채 상태를 나타낼 경우 2. 최신화 된 미래재무정보는 AFC 클럽라이선싱 파이낸셜 핸드북에 규정된 최소 공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다음 라이선스 주기에 있어서 본 기준의 준수는 라이선스 발급자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14조 (Article 14) :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14.1 권위를 갖는 문자 및 언어 (Authoritative text and language of correspondence)

AFC와 라이선스 발급자 및/또는 라이선스 소지자간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AFC는 라이선스 발급자 및/또는 소지자에게 자부담으로 공증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ACL 라이선싱 과정에서 본 규정과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AFC 클럽 라이선싱 규정이 우선한다.

본 규정은 AFC 및 연맹 정관, 징계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본 규정과 다른 AFC 규정간 내용상 불일치가 있을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본 규정의 각 장, 조항 등에 사용된 제목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제목이 본 규정의 실제 내용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해당 조항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14.2 별첨 (Annexes)

본 규정 내 모든 별첨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구성 된다 .

14.3 준수성 감사 (Compliance Audits)

14.3.1 AFC, 연맹 또는 AFC나 연맹이 지정한 기관은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의 준수성 감사를 항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4.3.2 준수성 감사는 라이선스 신청자/소지자가 본 규정 내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라이선스 발급자의 최종 결정 시기에 라이선스가 올바르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라이선스 소지자가 준수성 감사 실시에 비협조 적일 경우 AFC 또는 연맹은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해당 사법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14.4 실행 조항 (Implementing Provisions)

14.4.1 연맹은 지시사항으로 본 규정의 실행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채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14.4.2 연맹은 본 규정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해당 개정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14.5 명문화 되지 않는 사항 (Matters not provided for)

14.5.1 K리그 클럽 라이선싱 규정의 영문판과 국문판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영문판이 우선한다.

14.5.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종 결정권을 갖는 K리그 이사회가 결정하며, 연맹 정관, 규정 및 클럽 라이선싱 규정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검토한다. 해당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14.6 시행 (Enforcement)

14.6.1 본 규정은 2022년 8월 30일 연맹 이사회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14.6.2 본 규정은 2023-24 시즌 K리그 및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싱 발급부터 적용된다.

별첨 1 (Annex 1) :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for AFC Champions League)

A. 원칙 (Principle)

1. AFC 사무국은 규정 5.4.1조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a) 의사결정기구 또는 규정 6.4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b) 규정 8조에 정의된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c) 규정 8.2.2조에 정의된 평가방식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d) 규정 9조부터 13조 내 정의된 일부 기준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e) 규정 9조부터 13조 내 정의된 기준의 분류 또는 기준의 실행에 대한 도입 기간의 연장;
 - f) 라이선스 신청자의 법인형태 또는 기업구조의 변경 시 경우에 따라 규정 7.2.2조에 정의된 2년 규칙(Two year rule)을 미적용;
2. 조항 a)부터 e)와 관련된 예외는 협회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 적용될 수 있으며, AFC 클럽대회 참가를 위한 라이선싱 신청 제출 시 적용될 수 있다. 조항 f)와 관련된 예외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별 클럽에 인정된다.
3. 원칙적으로 예외는 한 시즌의 기간만 인정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맹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예외의 갱신은 신규 요청 시 가능하다.

B. 절차 (The Process)

1. AFC 사무국은 예외 요청에 대한 1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예외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조항 A(1) a) 부터 e) 에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AFC 사무국에 주요평가절차의 시작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조항 A(1) f) 내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는 항시 제출할 수 있다. 산하 클럽의 개편 또는 재정비(법인 형태의 변화, 클럽간 합병, 클럽의 분할, 청산 또는 파산)를 통보받은 라이선스 발급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AFC 사무국에 적절히 통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5. AFC 사무국은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협회의 영토 내 축구의 위치와 상황은 예외 적용 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한다.
 - a) 영토의 크기, 인구, 지리, 경제적 배경, 천재지변;
 - b) 협회의 크기 (클럽 수, 등록된 팀 및 선수 수, 협회의 행정 크기 및 수준 등);
 - c) 축구 수준 (프로, 세미프로 또는 아마추어 클럽);
 - d) 영토 및 잠재시장 내 스포츠로서 축구의 위치 (평균 관중 수, 중계방송 시장, 스폰서십, 잠재수익, 등.);
 - e) AFC 및 FIFA 순위;
 - f) 협회 내 경기장 소유 현황 (클럽, 시, 지역사회 등);
 - g) 국내 문체부를 포함한 국가, 지역 또는 지방당국의 지원(재정적 또는 기타);
 - h) 채권자 보호;
 - i) 법적 그룹 구조 및 보고 범위;
 - j) 클럽 정체성.

7. AFC의 결정사항은 협회로 전달되어진다. 해당 결정은 서면으로 전달되며, 결정에 대한 근거가 명시 된다. 연맹은 협회로부터 수신 후 이를 해당 라이선스 신청자 전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8. AFC 사무국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소는 AFC 정관 내 정해진 관련 조항에 의거,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로 넘어가기 이전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별첨 2 (Annex 2) : K리그 참가를 위한 예외 정책 (Exceptions policy for K LEAGUE)

A. 원칙 (Principle)

1. 본 예외 정책은 K리그에 한해 적용된다.
2. 연맹은 5.4.2조에 따른 의사결정기구로 다음 사안에 대한 예외를 승인한다:
 - a) 규정 8조에 정의된 주요평가절차에 대한 최소 요건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b) 규정 8.2.2조에 정의된 평가방식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c) 규정 9조부터 13조 내 정의된 일부 기준을 국내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미적용;
 - d) 규정 9조부터 13조 내 정의된 기준의 분류 또는 기준의 실행에 대한 도입 기간의 연장.
3. a), b), d) 항과 관련된 예외는 K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한 연맹에 등록된 모든 클럽에게 허용된다. c)항과 관련된 예외는 라이선스를 신청한 개별 클럽에게 허용된다.
4. 원칙적으로 예외는 한 시즌의 기간만 인정된다. 특정 상황 하에서 본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클럽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예외의 갱신은 신규 요청 시 가능하다.

B. 절차 (The Process)

1. FIB는 예외 요청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이다.
2. 예외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클럽은 조항 A(2) a), b), c), d) 내 정의된 항목에 대한 예외를 클럽 라이선싱 매니저에게 주요평가절차의 시작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 FIB는 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AFC 사무국의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재량권을 적용할 수 있다.
5. 결정사항은 라이선스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해당 결정은 사유를 서술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6. FIB의 결정에 대해 AB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AB의 결정은 최종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별첨 3 (Annex 3) -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the AFC Champions League)

1. 클럽 라이선싱의 임시 신청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은 본 규정 9조부터 13조 내 내용과 동일하다.
2. 연맹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즌 직전의 1월 31일까지 해당 클럽의 이름을 명시한 임시 신청 요청을 서면으로 AFC에 통보해야 한다.
3. 연맹은 해당 클럽에게 국내 수준에서 임시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연맹은 해당 클럽이 임시 신청 절차를 진행토록 준비시켜야 한다.
4. 해당 클럽은 필요한 서류상 증빙자료를 연맹에 제출해야 하며, 연맹은 본 규정 9조부터 13조 내 최소 기준과 관련하여 클럽을 평가해야 한다.
5. 연맹은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시즌 직전의 4월 30일까지 영문으로 작성된 다음 서류를 AFC로 제출해야 한다. :
 - a) AFC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라이선스 발급을 요청하는 클럽이 AFC Entry Control Body에 제출하는 서명 및 날짜가 기입된 서면 요청서. 해당 요청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 i. 클럽명 및 주소;
 - ii. 신청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클럽의 신원;
 - iii. 관련 규정에 대한 완성된 서면 의견;
 - iv. 연맹에 제출한 모든 서류상 증빙 자료;
 - b) 협회의 추천서 (클럽을 평가한 담당자의 이름 및 일자 포함);
 - c) AFC가 요청하는 기타 서류
6. 본 임시 신청 절차 중 해당 클럽이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대회성적을 얻지 못한 경우, 연맹은 AFC 사무국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하며, 해당 절차는 추가 결정 없이 마무리된다. 그렇게 마무리된 절차는 이후 단계에서 재개될 수 없다.

별첨 4 (Annex 4) : K리그 참가를 위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

(Extraordinary application of the Club licensing system for K LEAGUE)

1. 본 임시 신청은 신규 가맹클럽의 K리그2 참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본 신청은 신생팀의 첫 번째 시즌에만 적용된다.
2. 규정 7.6조에 명시된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임시 신청에 대한 적용 가능한 최소 기준은 본 9조부터 13조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라이선싱 행정부는 7.6.1.1조를 적용한다.
3. 라이선싱 행정부는 신생 신규 가맹 클럽 또는 신규 가맹을 희망하는 클럽에게 늦어도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 년도의 9월 30일까지 해당 클럽에 서면으로 신청을 고지해야 한다.
4. 라이선싱 행정부는 해당 클럽에게 임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책임을 가진다. 라이선싱 행정부는 임시 신청 절차에 대해 해당 클럽의 준비를 지원한다.
5. 해당 클럽은 라이선스 발급 시즌 직전년도의 10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상 증빙자료를 지정된 최소 기준을 통해 클럽을 평가하는 라이선싱 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6. 의사결정기구(6.4조 참조)는 수신한 서류를 바탕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경우 K리그2 참가를 승인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럽 라이선싱 행정팀

www.kleague.com

TEL. 02-2002-0685 | FAX. 02-2002-0671